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병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5692

발의연월일: 2022. 5. 23.

발 의 자:서병수·김형동·이종배

김태호 · 정우택 · 안병길

전봉민 • 박성민 • 이헌승

김승수 · 서일준 · 백종헌

이주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휘발유 또는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 교통 ·에너지·환경세를 부과하면서,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,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, 환경의 보전·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대·내외 불안정성이 확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행법과 같이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 달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 여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영(零)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한시적으로 최대 100% 면세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3항). 법률 제 호

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 • 에너지 • 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"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"를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낮추거나 영(零)으로 할 수 있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條(課稅對象과 稅率) ①・②	第2條(課稅對象斗 稅率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	③
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	
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	
육성 사업, 에너지 및 자원 관	
련 사업, 환경의 보전·개선사	
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	
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	
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	
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	따라 기간을 정하여 낮추거나
<u>정할 수 있다</u> .	영(零)으로 할 수 있다.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